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-1697호

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공고

"코로나19"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3조 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공고합니다.

<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>

구분		이수기한(당 초)	이수기한(변 경)
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	2009. 12. 31. 이전	2020. 12. 31.	2021. 12. 31.
	2010. 1. 1. ~ 2014. 12. 31.	2021. 12. 31.	2022. 12. 31.
	2015. 1. 1. ~ 2019. 10. 17.	2022. 12. 31.	2023. 12. 31.
	2019. 10. 18. 이후	변동 없음	
안전교육 기 이수자(~2020. 12. 31)		2023. 12. 31.	2024. 12. 31.

※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: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

2020년 12월 24일

국토교통부장관

기타 사항

○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 중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자는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,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(044-201-3543, tg4055@korea.kr) 및 전문교육기관(www.ceoedu.kr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